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교육발전특구 설치·운영 근거 마련〉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360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참고1]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기준	7
[참고2]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현황	8
[참고3] 교육발전특구 중점 추진내용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도읍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29.
3. 회부연월일 : 2024. 7.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2023.7.10. 시행)하였음. 이를 통해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에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지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조성 근거가 마련되었음.

하지만,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 유치 뿐만 아니라 지역 교육여건 개선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조성 근거 역시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교육발전특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법 제정을 통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공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방인재의 양성·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교육발전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35조의2 (교육발전특구의 설치·운영) ① 국가는 공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방인재 양성과 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발전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발전특구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발전특구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서 교육부는 2024년 2월부터 총 56개 지역¹⁾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1) p. 8,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현황 참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개요 및 정책방향]

□ 개요

- (개념) 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
- (목적)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역 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 활성화
- (지정 단위)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 3유형으로 운영²⁾

유형	신청 단위	신청 주체
1유형	기초자치단체	기초단체장-교육감
2유형	광역자치단체	광역단체장-교육감
3유형	광역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기초자치단체	

- (지정 지역) 수도권이 아닌 지역
- (적용 특례) 특구 운영을 위한 지역 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
 ※ 시범운영 기간(3년) 동안 특구당 매년 30억원(기초), 100억원(광역) 규모의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지원, 이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종합평가 후 정식 특구 지정 예정

□ 주요 정책방향

- (지역인재 생태계 조성)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지역대학에 진학하고 취·창업하여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여건 개선 지원
- (공교육 경쟁력 제고) 공교육 틀 내에서의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학교 자율성 확대와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교육역량 강화
- (자치단체의 지원 확대) 자치단체의 지원 및 교육정책 지역 권한 강화 등 특구 내 교육 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과 책무성 강화
- (규제 합리화)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교육 관련 규제 완화 및 특례 지원

※자료: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추진계획」

2)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p.7 [참고1]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기준 참고

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자유특구’의 설치·운영 근거³⁾를 마련하고 있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①수월성 위주의 교육 우려, ②교육위원회의 선행 논의 필요 등⁴⁾을 이유로 삭제되어 현행법에는 반영되지 않았음.

개정안은 교육발전특구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인재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여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등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교육발전특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2024년 하반기에 제출할 예정이므로 해당 법률의 논의 경과를 참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정부제출, 의안번호 제2118061호)

제35조(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등) ①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자치와 제2항에 따른 교육자유특구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4) 제404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회의록, 제405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회의록 및 제406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회의록 등 참조

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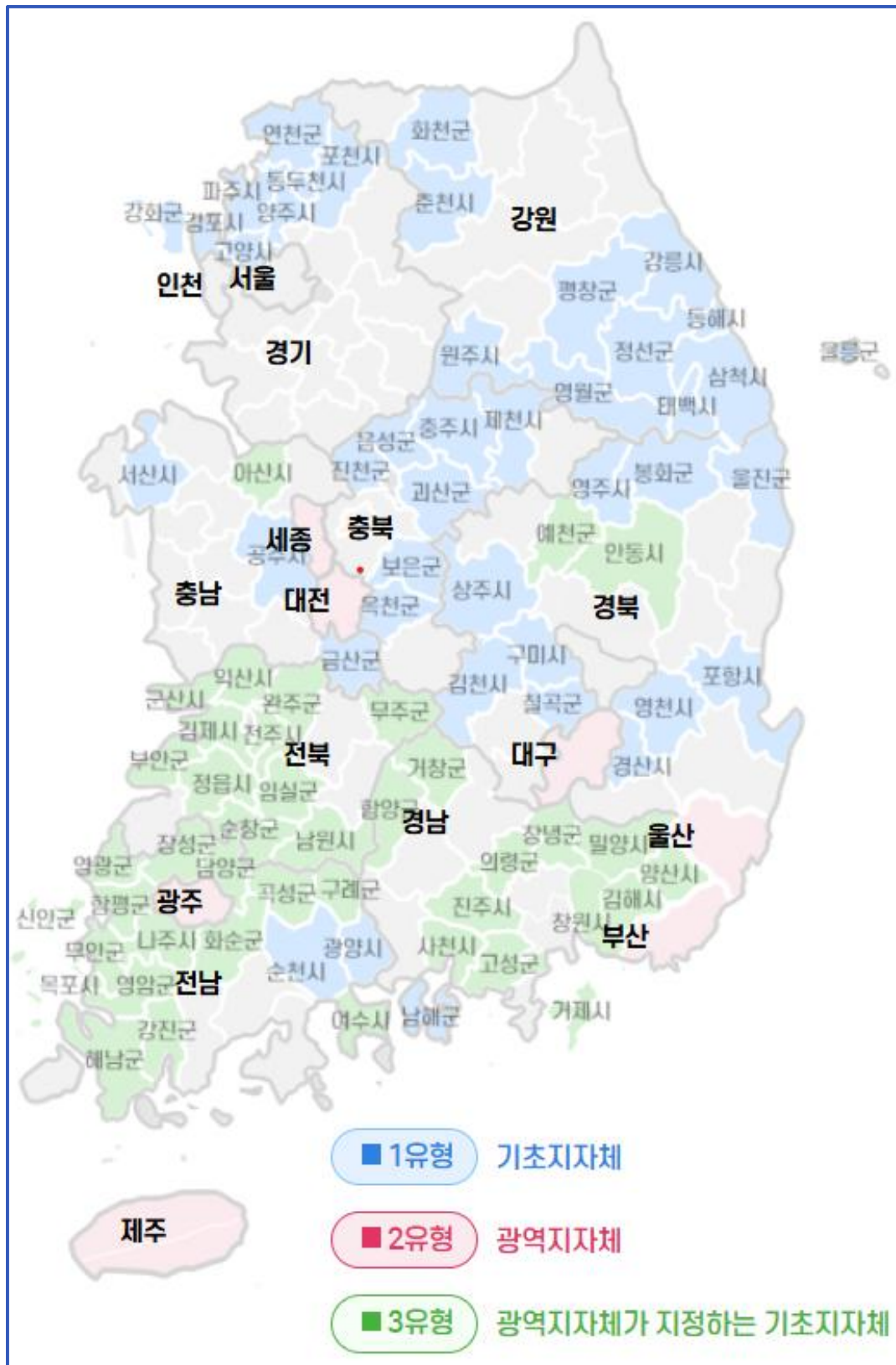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개정안과 같이 현행법에 교육발전특구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에서 마련할 개별 법률안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4

[참고1]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기준

영역	지정 주안점
1. 지정의 합목적성	○ 특구의 정책 목표에 시범지역 운영 방향이 부합하는가? ○ 지역 여건·특성을 반영한 교육발전특구 청사진을 제시하였는가? ○ 지역 발전전략과 특구의 교육혁신 전략을 적절하게 연계하였는가? ○ 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2. 사업계획의 우수성	○ 특구 운영의 비전과 목표가 명확한가? ○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이 충분한가? ○ 지역의 통합적 발전을 위해 차별화된 사업계획을 제시하였는가? ○ 특구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인재 양성 기반이 구축될 수 있는가?
3. 연계·협업의 적절성	○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간 연계·협력을 위한 실행 방안이 충실히 마련되어 있는가? ○ 지역 참여기관 간 협력체 구성과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 타 특구 및 지역발전사업, 교육개혁 과제 등과의 연계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지역주민, 학부모 등 의견수렴 절차를 추진하였는가?
4. 재정 계획의 적정성	○ 특구 운영을 위한 자원 조달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 지자체, 교육청, 지역 기관 간 재정 분담 계획이 적절한가?
5. 성과관리의 체계성	○ 사업성과목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 달성 가능성이 높은 성과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사업운영 성과를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가?

[참고2]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현황



※ 참고로, 1차 지정 시 총 40개의 지자체가 신청하였으며, 이중 31개 지자체가 선정되었고, 2차 지정 시에는 지정을 신청한 47개 지자체 중 25개의 지자체가 선정되었음.

[참고3] 교육발전특구 중점 추진내용

Ⅱ 교육발전특구 선순환 체계(안) Ⅱ

	유아·돌봄	초·중·고	대학
목표	·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역 주도 교육개혁 지원 · 지역의 좋은 학교 육성	· 지역인재 유출 방지
추진 방향	↓ · 지방정부 돌봄 역할 강화 · 유보통합 시범운영	↓ · 공교육 경쟁력 제고 · 디지털기반 수업 혁신	↓ · 고교-대학-지역 연계 강화 · 지역 인재 선발·양성
성과 지표	↓ · 출산율 상승	↓ · 학업성취도 상승 · 사교육비 감소	↓ · 지역인재 전형 비율 확대 · 지역인재 취업률 상승

○ (유아·돌봄 분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맞춤형 유아교육돌봄)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를 통해 학부모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 모델 발굴·확산
- (지방정부 돌봄 역할 강화) 지자체·교육청 협력 방과후·늘봄지원센터 운영 등 돌봄에 대한 지역 단위의 책임과 역할 강화

○ (초·중·고 분야) 지역 주도 교육개혁 지원, 지역의 좋은 학교 육성

- (지역 공교육 강화)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학교별 여건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 (학교교육 혁신)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 방안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지역의 좋은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전체의 공교육 내실화
- (학생 성장 지원) 학업, 진학, 과학기술교육, 직업교육, 예체능교육, 최신 분야 학습 등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 성장을 종합 지원

○ 고등교육 분야 : 지역인재 유출 방지

- (지역인재 입학 전형 확대) 지역인재 특별전형 확대와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방지
- (지역교육 중심 역할 수행)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혁신을 통해 대학이 지역교육 및 산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